

# 투자중개회사 선정기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주)

회사는 선관주의의무와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고,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한 투자중개회사 선정 및 평가시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1. 투자중개회사 선정 및 승인

회사가 거래상대방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근간은 거래 투자중개회사 선정 및 승인 절차에 관련된 실사(due diligence)에 있다. 라자드의 트레이딩 시스템은 승인된 투자중개회사와의 트레이딩만 허용한다.

신규 투자중개회사 선정 및 추가는 아래의 공식적인 검토와 승인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 1) 신규거래 투자중개회사 승인 요청 제출.
- 2) 투자중개회사의 신용가치, 재무적 안정성, 법상 제반 신고 및 보고서, 업계 위치의 검토 및 평가.
- 3) 컴플라이언스에서 투자중개회사의 규제 침해 위험 여부 검토.
- 4) 트레이딩, 오퍼레이션, 컴플라이언스 대표들에게 최종 검토를 위한 추천서 제출.
- 5)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자중개회사 승인 및 라자드 투자중개회사 리스트에 추가.

## 2. 투자중개회사 평가

라자드 투자중개회사(브로커) 위원회에서는 매매와 조사분석 서비스를 포함한 투자중개회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검토한다. 라자드 투자중개회사 위원회는 트레이딩, 포트폴리오운용, 컴플라이언스, 오퍼레이션 대표들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는 중개회사들의 부가가치 여부를 검토한다. 동 위원회에서는 외부 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한 중개회사들의 분기별 매매비용 보고서를 받아 분석하며 이 보고서는 트레이딩 대표에 의해 검토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 위원회는 투자중개회사 수수료 정책을 세우고 비용 분석을 한다. 투자중개회사들은 제공된 조사분석의 질과 매매 서비스에 의해서 평가된다. 리서치 애널리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들에 의한 분기별 투자중개회사 평가 투표가 시행되며, 투자중개회사 평가 투표결과에 의해서 투자중개회사 수수료 배분 추천이 이루어진다.

### 3. 라자드 그룹 규정

회사는 이 기준에서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라자드 그룹의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한다.